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 395 2020.09.16.(수) 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0년 3월 30일

나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다. 회부일자 : 2020년 3월 31일

라. 상정일자 : 제381회 충청북도의회(임시회)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

(2020년 4월 22일 심사보류)

제385회 충청북도의회(임시회)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

(2020년 9월 8일 상정의결)

마. 주요내용: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수정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김도경 주민청구조례 청구인)

가. 제안이유

- O 청구취지 및 이유
 -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4조, 제9조 및 제46조에 따라 충청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업·농촌의 공익기능을 보상하고 증진함과 동시에 충청북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
- O 대표자 및 청구일 : 김도경 / '19. 7. 30

○ 청구인명부 서명 제출 : 24,128명('19. 11. 28) ※ 청구요건 : '18년 말 기준 19세 이상 주민수의 1/100(13,289명)이상 서명

나. 주요내용

- O 목적(안 제1조)
 - 충청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업·농촌의 공익기능을 보상하고 증진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
- 도지사의 책무(안 제3조)
 -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의 권리 보장·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, 농민 수당 정책 시행의 행정적·재정적 지원
 - 농민수당 정책수립의 농업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활동 지원 및 홍보
- 농업인의 참여(안 제4조)
 - 농업인은 공익적 가치를 인식하고, 마을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및 농생태계의 보존 등 노력
- O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(안 제5조)
 - 도지사는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농민수당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, 위원회는 지급대상자 결정, 지급시기 및 지급액, 각종 교육 및 홍보 등을 심의·의결
- O 지급대상(안 제8조)
 -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으로 충청북도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범위 결정
- 지급방법 및 지급액(안 제9조)
 - 농민수당은 지급대상자에게 월 10만원의 금액을 시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, 단 시군 관내에서 사용 가능한 수단이

없을 경우 충북과내 사용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

- 도지사는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해당연도의 지급시기 및 지급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음
- O 지급신청 및 지급결정 절차(안 제10조)
 - 농업인은 지급신청서를 해당 이장에게 제출하고 이장은 실경작 사실 등을 확인하고 시장·군수는 지급대상 후보 결정
 -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지급대상 결정
 - 농업인은 충청북도에서 주최하는 농민수당 관련 마을교육을 이수한 뒤 농민수당을 지급받음
 - 주소지와 영농구역이 다른 경우 영농구역의 마을을 선정하여 지급 신청서 제출과 마을교육을 이수 할 수 있음
- 지원제외(안 제11조)
 - 신청 전연도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,700만원 이상 인 농민
 - 신청 전연도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 사실이 있는 농민
 - 신청 전연도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위반 사실이 있는 농민
 - 신청 전연도 농지·산지와 관련된 불법 행위로 법적 처분 받은 농민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문석)

- O 제안사유
 - 청구인대표 김도경 등 9명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30일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청구서가 접수되어, 같은 법 제15조제9항 및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의견을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부의함
- O 주요 검토의견

- 안 제2조제3호의 '농업경영체' 정의를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'농업인'과 '농업법인' 중 조례안에는 '농업인'으로 한정하여 '법률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'를 변경하는 것으로, 향후 '농업경영체'라는 법적 용어에 대한 혼란을 유발할 수 있음
- 같은 조 제2호에 규정된 '농업인'의 정의와 제4호의 농민수당 지급대상자인 '농민'의 표현에서 용어정의가 않되 '농민'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용어정의가 필요함
- 안 제6조의 '위원회의 구성' 중 제5항 위원회 위원 해촉 규정의 제3호 '위원회 회의에 자주 참가하지 않거나' 라는 규정의 '자주' 에 대한 명확한 수치적 개념이 필요함
- 안 제8조 제1항제2호에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에 해당하는 농업인이 지급대상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는데, 시행령 제1항제3호의 '1년 중 3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'을 포함할 경우 지급대상자의 확대가 우려됨
- 안 제11조(지원제외) 대상에 '일정액 이상의 고소득 농업인'과 '일정액 이상의 고액 재산을 보유한 농업인'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
- 집행기관의 농민수당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와 농민수당에 대한 시·군의 의견수렴 결과, 농민수당(선별적, 조건적) 국민·도민 공감대 부족, 농민수당 소요예산 추정액 분석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"생 략"
- 5. 토 론 요 지: "생 략"

6. 수정안의 요지

가. 수정이유

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급대상은 농가단위로, 지급금액은 연 50만원으로 하며, 시행 시기는 2022년 1월 1일로 정하고, 조례의 형식과 내용은 집행부와 농민단체간의 합의안을 반영하여 정함

나. 주요 수정내용

- O 조례명을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함
- 안 제8조 지급대상은 신청연도의 1월 1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,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고 농 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요건을 강화함
- O 안 제9조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액은 연 50만원으로 하고, 시·군 관 내에서 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토록 함
- 안 제11조 지급 제외 요건을 강화하여 신청 전(前)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2,900만원 이상인 농가로 정하고, 농업경영체등록 5 년 미만 귀농인과 공무원연금, 국민연금, 사립학교 교원연금 수급 자 등 지급 제외 요건을 신설함
- 7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
- 8. 소 수 의 견 요 지 : "없 음"
- 9. 기타 필요한 사항 : "없 음"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.
-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(수정안 포함) 1부. 끝.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조례명을 포함한 조례안 내용 중 "농민수당"은 "농업인 공익수당"으로, "농민"은 "농업인"으로 수정한다.

안 제1조, 안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농업"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.
- 2. "농업인"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.
- 3. "농업경영체"란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 3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.
- 4. "농업인 공익수당"이란 농업·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 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.
- 5. "농업·농촌의 공익적 기능"이란 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.

안 제4조 중 "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·관리에"를 "자연자원을 지속가능 하게 사용·관리하도록"으로 수정한다.

안 제5조제2항 중 "심의·의결한다"을 "심의한다"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.

- 1.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액
- 2. 그 밖에 도지사가 농업인 공익수당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6조(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 -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 - 1. 기획관리실장
 - 2. 농정국장
 - 3. 농업기술워장
 - 4.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충청북도의회 의원 2명 이내
 - 5. 농업 관련 기관·단체의 대표 4명 이내
 - 6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명 이내
 - 가. 농업 관련 대학·연구소에서 부교수·부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
 - 나. 농업 관련 단체·행정기관·사업체 등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
 -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 -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 - 1. 사망, 질병,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 - 2.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
 - 3.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거나,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
 - 4. 「공직선거법」에 따라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
 - 5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
안 제7조제4항 중 "간사는 위원회 운영 부서의 농민수당 업무 담당으로 한다"를 "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"로 수정한다.

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**제8조(지급대상)** 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에 거 주하는 농업인에게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는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으로 한다. 다만, 공동경영주가 등록된 농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을 지급 대상자로 한다.
 - 1. 신청 연도의 1월 1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
 - 2. 신청 연도의 1월 1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
 - ③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.
 - 1.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,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
 - 2. 주민등록상 다른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
 - ④ 도지사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지급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다.
- 제9조(지급액 및 지급방법) ①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액은 연 50만원으로 한다.
 - ② 농업인 공익수당 재원은 도비 및 시·군비 등으로 충당한다.
 - ③ 농업인 공익수당은 충청북도 시·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 하여야 한다. 다만, 충청북도 시·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이 없을 경우 충청북도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다.
 - ④ 그 밖에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

- 제10조(지급신청 등) ① 농업인 공익수당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해당 주소 지를 관할하는 읍·면·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읍·면·동장은 신청서를 취합하고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시장·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③ 시장·군수는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.
 - ④ 그 밖에 농업인 공익수당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

안 제11조의 제목 "(지원제외)"를 "(지급제외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"3,700만원 이상인 농민"을 "2,900만원 이상인 농가"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"신청 전(前)연도에"를 "신청 전(前) 5년내"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5. 농업경영체등록 5년 미만 귀농인
- 6.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사립학교 교원연금 수급자
- 7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·공기업 임직원
- 8. 제6호와 제7호에 따른 사람과 세대를 같이하는 농업인

안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2조(지급금의 회수 및 지급제한)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인 공익수당을 수령한 경우, 부정 수급한 시점부터 지급한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,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에서 5년간 제외한다.

안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, 제13조와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13조(준용)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,
 -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
- 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안 부칙 중 본문을 제1조로 하되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,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조례는 법률로 도입되는 농업인 공익수당과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워 아

수 정 아

(조례명)

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농업·농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농업과 농촌 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, 제 9조 및 제46조에 따라 충청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농민수 당을 지급하여 농업 · 농촌의 공익 기능을 보상하고 증진함과 동시에 충청북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 바지함을 목적을 한다.

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농업"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.

2. "농업인"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 품산업 기본법 |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. 3. "농업경영체"란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중에 농업인을 말한다. 4. "농민수당"이란 농업·농촌의 공 익기능을 수행하는 농민에게 지급

하는 금액을 말한다.

(조례명)

관한 조례안

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농업인 공익수당 지 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1. "농업"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 품산업 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.

> 2. "농업인"이란 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.

> 3. "농업경영체"란 「농어업경영 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. 4. "농업인 공익수당"이란 농업·농 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 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.

원 안	수 정 안
5. "농업·농촌의 공익기능"이란	
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	<u>란 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</u> 말한다.
제3 조(도지사의 책무) ① 충청북도	제3조(도지사의 책무) ①
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농 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의 권리	 농업인
 를 보장·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	
진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한 <u>농민수당</u> 정책의 시행을 위해 행정적·재정	<u>농업인 공익수당</u>
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 ② 도지사는 농민수당 정책 수립에	 ② 농업인 공익수당
있어 농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	
하고 지속가능한 농촌공동체 활성 화를 위해 마을 활동을 지원하며,	
이를 도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.	
제4조(농업인의 참여) 농업인은 스 스로가 공익적 가치 형성을 통한	
지속가능한 미래사회의 주체임을	
인식하여, 마을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, 농생태계의 보존 및 모	
든 <u>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·관</u>	<u>자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사용·</u>
<u>리에</u> 노력한다.	<u> 관리하도록</u>
제5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도 지사는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사	
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	
<u>농민수당</u> 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 회"라 한다)를 둔다.	<u> 농업인 공익수당</u>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	

아 워 수 정 아 심의·의결한다. 심의한다. 1. 농민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1.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액 2. 농민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액 2. 그 밖에 도지사가 농업인 공익 수당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〈삭 제〉 3. 농민수당에 관한 각종 교육 및 홍보 4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〈삭 제〉 인정하는 사항 제6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제6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 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 함하여 13명 으로 구성하며, 한 성 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 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넘지 않 으로 구성한다. 도록 한다.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지사 되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 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가 되고.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(互選)하다.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사람이 된다. 1. 도지사의 추천을 통해 충북도청 위촉한다. 을 대표하는 사람 3명 1. 기획관리실장 2. 농정국장 2. 도의원 2명 3. 농민단체의 추천을 통해 농업인 3. 농업기술원장 을 대표하는 사람 5명 4.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충청북도 의회 의원 2명 이내 4. 도지사와 농민단체의 추천을 통 해 선정된 농업분야 전문가 3명 5. 농업 관련 기관·단체의 대표 4명 이내

원 안

수 정 안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-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을 해촉할 수 있다.
- 1. 위원이 일신상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
 2.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
- 3.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자주 참 가하지 않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떨어뜨리는 등 직무를 수행하 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7조(위원회의 회의)

- ①~③ (생략)
- ④ 위원회에 사무를 담당할 간사를 두며, <u>간사는 위원회 운영 부서의</u> 농민수당 업무 담당으로 한다.

- 6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3명 이내
- 가. 농업 관련 대학·연구소에서 부교수·부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나. 농업 관련 단체·행정기관·사업체 등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
-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-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 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- 1. 사망, 질병,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.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3.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 하거나,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
- 4. 「공직선거법」에 따라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
- 5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 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 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7조(위원회의 회의)

- ①~③ (현행과 같음)
- 4 -----
- -----<u>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</u> <u>과장이 된다.</u>

|**제8조(지급대상)** ① 농민수당은 신|**제8조(지급대상)** ① 농업의 공익적 청년도 직전 1년 이상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업 인 가운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.

- 1.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_ 제4조제1항제1호에 따 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농 업인
- 2.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 법 시행령」 제3조의 기준에 해당 되는 농업인
-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급대상을 근거로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의 심 의·의결을 거쳐 해당연도 지급범위 를 정한다.

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충청북 도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농업 인 공익수당을 지급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는 「농어업경영체 육 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_ 제4조제 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업인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. 다만, 공동경 영주가 등록된 농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을 지급 대상자로 한다. 1. 신청 연도의 1월 1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
- 2. 신청 연도의 1월 1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③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중 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.
- 1.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 하고 있는 부부, 직계존비속, 형제 자매
- 2. 주민등록상 다른 주소에 거주

워 아

수 정 안

하고 있는 부부

④ 도지사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지급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다.

<u>제9조(지급방법 및 지급액) ① 농민 제9조(지급액 및 지급방법) ① 농</u>

수당은 제8조의 지급대상에게 월
10만원의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
되, 해당 충청북도 시·군 관내에서
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
한다. 다만, 해당 충청북도 시·군
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이
없을 경우 충청북도 관내에서만
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.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
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해당연
도의 지급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.

제10조(지급신청 및 지급결정 절차)

- ① 농민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농업 인은 농민수당 지급신청서를 해당 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이장은 신청자의 실경작 사실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류 전부를 관할 시장·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·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지급대상 후보

- <u> 영소(시급액 및 시급방법) ① 동</u> 업인 공익수당 지급액은 연 50만 <u>원으로 한다.</u>
- ② 농업인 공익수당 재원은 도비 및 시·군비 등으로 충당한다.
- ③ 농업인 공익수당은 충청북도 시·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 하여야 한다. 다만, 충청북도 시·군 관내에서만 사용 이 가능한 수단이 없을 경우 충청 북도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다.
- ④ 그 밖에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 지사가 따로 정한다.
- 제10조(지급신청 등) ① 농업인 공익 수당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·면·동장에 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읍·면·동장은 신청서를 취합하고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시장·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③ 시장·군수는 신청내용을 검토 하여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

워 아

야 하다.

를 결정한 후 도지사에게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.

④ 도지사는 시장·군수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· 의결을 거쳐 지급대상 농민이 결정 되면 시장·군수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.

⑤ 지급대상 농업인은 충청북도에 서 주최하는 농민수당 관련 마을교 육을 이수한 뒤 농민수당을 지급받 을 수 있다.

⑥ 지급대상 농업인 중에서 주소지 와 영농구역이 다른 경우 영농구역 의 마을을 선정하여 지급신청서 제 출과 마을교육 이수를 할 수 있다. ④ 그 밖에 농업인 공익수당 신청 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

수 정

Q}-

<u>제11조(지원제외)</u> 다음 각 호의 농 업인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.

- 1. 신청 전(前)연도의 농업 외 종합 소득금액이 <u>3,700만원 이상인 농민</u> 2. <u>신청 전(前)연도에</u> 직불금 등 각 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<u>농민</u>
- 예방법」위반 사실이 있는 <u>농민</u>
 4. <u>신청 전(前)연도에</u> 농지·산지와 관련된 불법 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민

3. 신청 전(前)연도에「가축전염병

〈신설〉

제11조(지급제외) -	
--------------	--

1.	 					 			_		
		20	00.	_1	رم	. 1	٠,	۱۵		1	

----- <u>2,900만원 이상인 농가</u> 2. <u>신청 전(前) 5년내</u> -----

농업인

- 3. <u>신청 전(前) 5년내</u> ------ 농업인
- 4. 신청 전(前) 5년내 -----
- -- <u>농업인</u>
- 5. 농업경영체등록 5년 미만 귀농인

원 안	수 정 안
〈신 설〉	6.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사립학
	교 교원연금 수급자
〈신 설〉	7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
	률」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·공기
/ >1 > 1 >	<u>업 임직원</u>
(신설)	8. 제6호와 제7호에 따른 사람과
	세대를 같이하는 농업인
제12조(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)	제12조(지급금의 회수 및 지급제한)
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	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
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농민수	인 공익수당을 수령한 경우, 부정
당 지급을 중지·환수하여야 한다.	수급한 시점부터 지급한 보조금을
1.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관할	
구역 밖으로 전출하는 등 실제로	지급대상자에서 5년간 제외한다.
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지급	
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	
2.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	
3.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	
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	
│ ^{──} │ ② 농민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	
에게 지급된 경우 지체없이 이를	
환수하여야 한다.	
〈신 설〉	제13조(준용) ① 이 조례에서 규정
	한 사항 외의 보조금에 관하여 필
	요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지방보조
	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	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

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「충

원 안	수 정 안
	<u>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</u> 조례」를 따른다.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	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
<u>다.</u> <u>부 칙</u>	<u>정할 수 있다.</u> <u>부 칙</u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2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.
	제2조(유효기간) 이 조례는 법률로 도입되는 농업인 공익수당과 유
	사한 제도가 시행되는 날까지 효 력을 가진다.

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(수정안)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농업"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.
 - 2. "농업인"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.
 - 3. "농업경영체"란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.
 - 4. "농업인 공익수당"이란 농업·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 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.
 - 5. "농업·농촌의 공익적 기능"이란 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.
- 제3조(도지사의 책무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업인의 권리를 보장·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한 농업인 공익수당 정책의 시행을 위해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 - ② 도지사는 농업인 공익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활동을 지원하며, 이를 도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.
- 제4조(농업인의 참여) 농업인은 스스로가 공익적 가치 형성을 통한 지속가 능한 미래사회의 주체임을 인식하여, 마을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, 농생태계의 보존 및 모든 자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사용·관리하도록 노력한다.

- 제5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도지사는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(이하 "위 원회"라 한다)를 두다.
 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액
 - 2. 그 밖에 도지사가 농업인 공익수당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6조(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 -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 - 1. 기획관리실장
 - 2. 농정국장
 - 3. 농업기술원장
 - 4.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충청북도의회 의원 2명 이내
 - 5. 농업 관련 기관·단체의 대표 4명 이내
 - 6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명 이내
 - 가. 농업 관련 대학·연구소에서 부교수·부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
 - 나. 농업 관련 단체·행정기관·사업체 등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
 -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 -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 - 1. 사망, 질병,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 - 2.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
 - 3.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거나,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

- 4. 「공직선거법」에 따라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
- 5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- 제7조(위원회의 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③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- ④ 위원회에 사무를 담당할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이된다.
- 제8조(지급대상) 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에 거주 하는 농업인에게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는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으로 한다. 다만, 공동경영주가 등록된 농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을 지급 대상자로 한다.
 - 1. 신청 연도의 1월 1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
 - 2. 신청 연도의 1월 1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
 - ③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.
 - 1.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,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
 - 2. 주민등록상 다른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
 - ④ 도지사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지급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다.

- 제9조(지급액 및 지급방법) ①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액은 연 50만원으로 한다.
 - ② 농업인 공익수당 재원은 도비 및 시·군비 등으로 충당한다.
 - ③ 농업인 공익수당은 충청북도 시·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 하여야 한다. 다만, 충청북도 시·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이 없을 경우 충청북도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다.
 - ④ 그 밖에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
- 제10조(지급신청 등) ① 농업인 공익수당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·면·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읍·면·동장은 신청서를 취합하고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시장·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③ 시장·군수는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.
 - ④ 그 밖에 농업인 공익수당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
- 제11조(지급제외) 다음 각 호의 농업인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.
 - 1. 신청 전(前)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,900만원 이상인 농가
 - 2. 신청 전(前) 5년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업인
 - 3. 신청 전(前) 5년내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위반 사실이 있는 농업인
 - 4. 신청 전(前) 5년내 농지·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업인
 - 5. 농업경영체등록 5년 미만 귀농인
 - 6.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사립학교 교원연금 수급자
 - 7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·공기업 임직원
 - 8. 제6호와 제7호에 따른 사람과 세대를 같이하는 농업인
- 제12조(지급금의 회수 및 지급제한)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인 공익수당을 수령한 경우, 부정 수급한 시점부터 지급한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,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에서 5년간 제외한다.

- 제13조(준용)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 -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조례는 법률로 도입되는 농업인 공익수당과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.